

제283회 임시회
2009. 9. 21(월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건설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09. 9. 21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9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9월 4일

상정일자 :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9. 9.14 :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정책과장 김 진 형)

제안 이유

○ 본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,

○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체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

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(법률 제9629호, 2009.4.22)됨
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운영 해)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소멸되었기에
-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이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9월 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
-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체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시행(법률 제9629호, 2009.4.22)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2. 의안전문 : 불 임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체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개 정 전	개 정 후('09.4.22)
<p>제28조(시·도 지역혁신협회의의 설치 등) ① 시·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·도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②시·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시·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⑤시·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⑥시·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</p> <p>⑦2 이상의 시·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(시·군·구 지역혁신협회의의 설치 등)</p> <p>①시·군·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군·구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·조정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·군·구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②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·군·구협의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</p>	<p>제29조(시·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p>